

제276회 강서구의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6차 회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 12.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 행정·재무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0년 12월 3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2020 - 127
- 나. 제출자 :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11월 5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11월 18일

2. 제안이유

2020. 7. 1.자 부서 조직개편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되어 개편된 조직에 맞게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기금의 존속기한 변경 (안 제6조)
 - 신청사건립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존속기한 변경 (2021.6.30. → 2026.6.30.)
- 나. 조직개편에 따라 부위원장 등 변경(안 제7조제2항, 제3항, 제11조제2항)
 - 부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행정관리국장으로 변경
 - 당연직 위원 중 기금담당과장→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
 -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
- 다. 「지방회계법」을 준용하여 경리관의 명칭 변경(안 제11조제3항)
 - 경리관→재무관으로 명칭변경

라.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42조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3) 「지방회계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0. 7.22.~ 8.1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 원안동의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 해당없음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을 위해 신청사건립추진단이 신설됨에 따라 공용의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변경하고, 관련 내용을 개편된 조직에 맞게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 개정내용

-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 변경(안 제6조)
 - 기존 2021년 6월 30일까지로 정하였던 기금 존속기한을 통합신청사 건립 준공일정¹⁾을 고려하여 2026년 6월 30일까지로 변경하였음
- 신청사건립추진단 신설을 반영한 조직개편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주요 보직자 변경(안 제7조제2항, 제3항, 제11조제2항)

1) 통합신청사 건립 준공일정 : 2026년 12월 예정

- 기존 조례에서는 부위원장을 기금담당국장으로 하였으나 신청사건립 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정해짐에 따라 행정관리국장을 부위원장으로 규정함
- 당연직 위원 중 기금담당과장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
- 기금운용관을 담당국장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장으로 변경함
- 「지방회계법」을 준용하여 경리관의 명칭 변경(안 제11조제3항)
 - 「지방회계법」 제29조를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명칭 변경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순화용어” 등으로 일괄 정비(안 제1조, 제6조, 제11조제4항, 제12조, 제13조)

다. 종합 의견

- 강서구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을 위해 2020년 7월 1일자로 신청사건립 추진단이 부구청장 직속으로 설치됨에 따라
- 본 개정조례안은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존속기한을 통합신청사 건립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2026년 6월30일까지로 5년 연장하고, 기존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 주요 보직자에 대한 명칭을 조직개편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²⁾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조직 개편에 맞춘 본 개정 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통합신청사 건립에 많은 예산과 기간이 투입되는 만큼 추진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금운용에 면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 :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142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서 "재산"이란 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7. 24.>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5. 7. 24.>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29조(지출원인행위) ①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이하 “지출원인행위”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재정법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⑨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⑩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